

# 구(旧) 신길7동청사 무상사용 허가 동의(안)

## 심 사 보 고 서

2006. 6. 23

행정위원회

### 1. 審 査 經 過.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06년 6월 19일 구청장

나. 회부일자 : 2006년 6월 22일 회부

다. 상정일자 : 2006년 6월 22일

제121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 상정의결

### 2. 提 案 說 明 의 要 旨 (제안설명자 행정국장 정진)

가. 제안사유

-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제①항, 제②항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제②항제1호, 동법 제24조제①항제4호 및 동법 시행령 17조제④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동의 후 시행하기 위한 것임.

나. 주요내용

- 신길7동 신청사 건립 이전에 따른 구(旧) 신길7동 청사를 중기대책으로 청사부지(구립어린이집 포함)에 민자를 유치하여 건물신축 후 기부채납 받아 우리구에서 일부분을 활용하는 방안으로 추진하되, 우선 한시적으로 사무실 협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시시설관리공단에 무상사용을 허가 하고자 함.

다. 구(旧) 신길7동 청사 무상사용 허가 재산

- 위 치 : 영등포구 신길동 869
- 소유자 : 영등포구
- 대지면적 : 617.4㎡ (187평)
- 건축연면적 : 561.71㎡
- 사용부서 : 영등포구 도시시설관리공단

라. 허가기간 : 계약일로부터 2년 이내

마. 허가후 활용방안 : 영등포구 도시시설관리공단 사무실 및 주차장으로 활용

### 3. 專門委員의 檢討報告 要旨 (專門委員 김찬재)

-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 제1항제1호에서 규정한 공유재산의 수익허가 및 동법 제24조제1항제4호에서 규정한 공기업의 이용에 대한 사용료의 면제에 근거한 타당한 조치로 사료됨.

### 4. 審査結果 : 原案可決